기타	· 재산수입
(54	545)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2021년	계획	202	2년	증감	
7 7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기타재산수입	312	236	236	142	142	△94	△39.8

# 1. 법적 근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2. 수입 개요

○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의 유입시점과 공적자금부채의 상환을 위한 지출시점의 단기 시차로 인해 일시 보유하는 여유자금 운용수익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85	215	632	317

7	기타경상의신구립
	(59 - 596)

(단위: 백만원, %)

<b>모명</b> 2020년		2021년	계획	202	2년	중감	
78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기타경상	10	1 250 000	1,250,000	2 100 000	2 400 000	1 150 000	92.0
이전수입	10	1,230,000	1,230,000	2,100,000	2,400,000	1,130,000	92.0

# 1.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 2. 수입 개요

- 부실채권정리기금 사후정리 전입금 및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의 전입액\*
  - \* 21년부터 발생되는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잉여금 중 전입가능한 금액을 이전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4,329	19,007	16	10	

재고자산매각대
(73 - 73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2021년	! 계획	202	2년	증감	
7 3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재고자산 매각대	_	22,749	22,749	28,295	28,295	5,546	24.4

### 1. 법적 근거

- o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8.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 o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정산하여 돌려받은 자금(대통령령 제1551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물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그 현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 등)
- ④ 기금의 운용은 2013년 11월 22일가지 이를 할 수 있다.
-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2. 수입 개요

○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13.2.22.)에 따라 현물로 반환 받은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각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 재원 마련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_	-	_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목명		2021년	! 계획	202	2년	증감	
7 7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일반회계	2 100 000	2 600 000	2,600,000	2 600 000	2 600 000		
전입금	2,1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_	-

# 1. 법적 근거

- ㅇ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 ②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 2. 수입 개요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원금기준)을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조원('02년 현재가치 기준)을 지원받아 25년간 상환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8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특별회계전입금	
(91 - 9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2021년	l 계획	202	2년	증감	
73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특별회계 전입금	103,375	108,304	108,304	108,597	108,597	293	0.3

### 1. 법적 근거

- ㅇ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5. 「기업예산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
  - ④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2. 수입 개요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금융권 및 정부의 손실 분담이 불가피한 여건에서 정부의 지급보장하에 성장한 우체국 금융에서도 일정부분 공적자금 상환을 분담
- 2004년~2027년까지 우체국 예금·보험 평균잔액의 0.1%를 부과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85,119	88,122	96,103	103,375

기금예수금
(94 - 94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2021년	! 계획	202	2년	증감	
73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공공자금관리	8 010 2 <b>2</b> 0	2 161 062	2,161,062			△2,161,062	△100.0
기금예수금	0,019,320	Z,101,00Z	Z,101,00Z	-	_	\101,002	△100.0

# 1. 법적 근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2. 수입 개요

○ 매년 만기도래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국채발행자금) 으로 조달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3,319,700	-	6,179,500	8,019,320

# 세계잉여금이입액 (89-892)

#### < 공적자금상환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2021년	<sup>1</sup> 계획	202	2년	중감	
7 7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세계잉여금			1 026 190				
이입액	_	_	1,036,180	-	_	_	-

### 1. 법적 근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2. 「국가재정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
- ㅇ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2. 수입 개요

○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우선 사용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684,876	1,219,786	38,500	-

# 전입금환급

(1171-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금융위원회	그고게서저체제	0	010	014
명칭	상환기금	급행기전의	구조개선정책관	U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71	302
명칭	금융정책	공적자금관리	전입금환급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	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게보기시다	2020년	2021년	<u></u> 계획	202	2년	증감	
세부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전입금환급	185	15,851	15,851	13,305	80	△15,771	△99.5

#### 4. 사업목적

○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가 결정될 경우 패소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사후관리 비용 지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 (추진경위) '13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계류중이던 소송의 패소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 '15년도에는 기금의 사후관리비, 법무비용 등에 사용되는 청산비용 유보금을 반환함에 따라 패소가 결정되는 소 송의 패소금을 상환기금에서 지급하며, 그 밖에 소송 수행 관련 비용과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경비를 상환기금에서 지출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사업시행주체: 금융위원회

# 기금관리비 (3574-2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무문
코드	공적자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0	010	014
명칭	상환기금	ㅁ짱뀌면의	7 2/11/2/8/41	U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74	2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	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0년	2021년	<u></u> 계획	202	2년	중감	
기구/1월경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기금관리비	1.2	5	5	4.6	5.0	-	-

# 4. 사업목적

ㅇ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를 위해 집행하는 기본적인 운영경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o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 (추진경위)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투입된 정부 부담분 49조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2003.1.1.)하고 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집행

#### 6. 주요내용

사업기간: 2003년~2027년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금융위원회

# 자산매각비 (3574-2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금융위원회	그고게서저체제	0	010	014
명칭	상환기금	ㅁ팡귀전의	구조개선정책관	U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74	203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자산매각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0년	2021년	계획	202	2년	증감	
기구/1월경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자산매각비	-	107	107	107	90	△17	△15.9

#### 4. 사업목적

○ '13.2.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된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시 필요한 매각주관사 수수료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 (추진경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를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9111-84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금융위원회	그고게서저체제	0	010	014
명칭	상환기금	ㅁ팡귀전의	구조개선정책관	U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11	841
명칭	기그가지레/레스의그사회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0년	2021년	l 계획	202	2년	증감	
게구자협정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공공사금관리기금	0.222.627	E 254 400	6,290,225	4 000 044	4 405 427	∧ 949 O€2	↑ 1 6 D
예수원금상환	9,323,637	3,234,400	6,290,223	4,000,044	4,403,437	\\\\\\\\\\\\\\\\\\\\\\\\\\\\\\\\\\\\\\	△16.2

#### 4. 사업목적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03~'06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한 후 동 국채발행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의 원금을 상환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2. 기금의 부채 상환
- (추진경위)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투입된 정부 부담분 49조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03.1.1)

#### 6. 주요내용

사업기간: 2006년~2027년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사업시행주체: 금융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9211-84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금융위원회	그고게서저체제	0	010	014
명칭	상환기금	ㅁ팡귀전의	구조개선정책관	U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11	842
명칭	기그가기계(레스이기사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5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상환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0년	2020년 2021년 계획		202	2년	증감	
게구가협정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공공기금관리기금	899,208	844,435	844,790	715,277	702 100	△141,326	△16.7
예수이자상환	099,200	044,433	044,790	713,277	703,109	\(\text{\text{141,320}}\)	△10.7

#### 4. 사업목적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03~'06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한 후 동 국채발행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의 이자를 상환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기금의 부채 상환
- (추진경위)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투입된 정부 부담분 49조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03.1.1)

## 6. 주요내용

사업기간: 2003년~2027년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사업시행주체: 금융위원회

# 통화금융기관예치

(9715-97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금융위원회	그고게서저체제	0	010	014
명칭	상환기금	ㅁ팡귀전의	구조개선정책관	U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5	971
명칭	서스킨그으요	통화금융기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명성	여유자금운용	(공적자금상환기금)	중화급행기원에서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bigcirc$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0년	2021년	계획	202	2년	중감	
게구가협정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예치	_	27,553	27,553	28,296	28,313	760	2.8

#### 4. 사업목적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을 지출한 후 '17년 말 보유 여유자금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 (추진경위)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투입된 정부 부담분 49조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03.1.1)

#### 6. 주요내용

사업기간: 2003년~2027년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사업시행주체: 금융위원회